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고 제2025 - 119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업9급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8월 18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001	공업9급 (농업기계)	1명	정년 적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제주 서귀포시)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001	감귤연구 시험포장 관리	공업9급 (농업기계)	○ 농작업 기계, 인력운영 및 관리 - 농작업 기계,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 시험포장관리(포장인부·농자재관리, 방제·제초)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 9. 23.) 기준]

<table>
<tr><th>채용분야</th><th colspan="2">응사자격요건</th></tr>
<tr><td rowspan="2">감귤연구
시험포장
관리</td><td rowspan="2">자격증</td><td>○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자
<table><tr><td>기 사</td><td>농업기계</td></tr><tr><td>산 업 기 사</td><td>농업기계</td></tr></table>○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table><tr><td>기 능 사</td><td>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td></tr></table></td></tr>
<tr><td>*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업무 담당한 경력</td></tr>
</table>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해당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시 부적격으로 처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서류마다 응시자격을 다르게 기재할 경우 '이력서' 기준으로 판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2025. 9. 23.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일까지만 경력 인정)**

○ 자격증의 범위

- 응시자격 요건의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의미하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5. 9. 23.)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경력(재직) 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에 한함('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인정 불가)**

  • 개인사업자(사업주)나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하며, 보완서류는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연구과제참여 확인서 등) 필수 제출**(①+②+③+④ 모두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주00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증명서는 **직인날인 하며**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기재
  - 경력기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직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가능한 경우**
-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②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불가한 경우**
-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관련 직무분야 경력임을 증명해야 함

예시) 근로계약서, 연구과제참여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추가 제출
(응시자 이외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5. 8. 29.) 기준]

<table>
<tr><th>채용분야</th><th>구분</th><th>우대요건</th></tr>
<tr><td rowspan="3">감귤연구
시험포장
관리</td><td>자격증</td><td>○ 직무 관련 복수 내지 상위 자격증 소지자 (최대 1건, 등급별 차등 우대)
- 아래 자격증 중 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된 자격증은 제외하고 최대 1건 등급별 차등 우대
<table><tr><td>기사이상</td><td>농업기계, 일반기계, 건설기계정비</td></tr><tr><td>산업기사</td><td>농업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td></tr><tr><td>기 능 사</td><td>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굴삭기 운전, 지게차 운전</td></tr></table>* 등급 구분: 기술사·지도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td></tr>
<tr><td>경력</td><td>○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
- 응시에 필요한 경력 제외, 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업무 담당한 경력</td></tr>
<tr><td>장애인</td><td>○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 증빙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 제출한 증빙서류 중 1개만 인정(중복 불인정)</td></tr>
</table>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우대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25. 8. 29.)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자격요건 충족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분야 근무경력(공무원경력+민간경력 통산)
  - 인정되는 경력 및 경력증명서 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응시자격 고려사항-경력의 범위' 참조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2개 이상 제출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중복 불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및 제출 불필요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직무전문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8.18.(월) ~ 8.29.(금)	'25.8.27.(수) ~ 8.29.(금)	'25.9.12.(금)	'25.9.23.(화)	'25.10.13.(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5. 8. 27.(수) ~ 8. 29.(금)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5536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공업직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63-238-6212 * 방문접수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지원과(1층)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사본 1부	제척사항 확인용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관련 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증빙서류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귀속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기한 및 취소기한 미준수,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의사 철회는 이메일(kimchihong1korea.kr)로 지원코드, 성명, 철회의사 등을 기재하여 보내주시고, 전자수입인지는 응시자 본인이 은행·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환매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달 이내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5. 10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 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통해 결정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63-238-621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001	감귤연구 시험포장 관리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1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제주 서귀포시)

주요 업무	○ 농작업 기계, 인력운영 및 관리 - 농작업 기계,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 시험포장관리(포장인부·농자재관리, 방제·예초·제초)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 지향마인드(공복의식), 조직 친화적인 마인드(사회성, 친화성)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문제해결력
필요 지식	○ 농기계 및 일반기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 온실, 포장 등 농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 식물 생육 및 재배관리에 관한 지식 ○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자 기 사 / 농업기계 산 업 기 사 / 농업기계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 능 사 /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업무 담당한 경력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 ○ 직무 관련 복수 내지 상위 자격증 소지자 (**최대 1건**, 등급별 차등 우대) - 아래 자격증 중 **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된 자격증은 제외**하고 최대 1건 등급별 차등 우대 기사이상 / 농업기계, 일반기계,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 농업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기 능 사 /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굴삭기 운전, 지게차 운전 ○ 장애인 우대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조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필수서류를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은 반드시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필수	별지서식 제1호	ㅇ 자필 서명 필수
2. 응시원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2호	ㅇ **응시수수료: 5,000원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3호	ㅇ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4호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ㅇ **출생지, 부모직업, 근무기관명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5호	ㅇ A4 3매 이내로 작성 ㅇ **출생지, 부모직업, 근무기관명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6호	ㅇ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7호	ㅇ 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8. 주민등록초본	필수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또는 병적증명서) 하여 발급 ㅇ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ㅇ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9.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필수	-	ㅇ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사본
10. 최종학교 졸업 (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사본 1부	필수	-	ㅇ 전공분야 표시 ㅇ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11. 관련분야 경력 (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	별지서식 제8호	ㅇ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등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 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12.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	ㅇ 우대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사본 ※ 명시된 자격증 외 자격증 사본은 제출 불요
13. 우대요건 해당 장애인 증명서 1부	해당자	-	ㅇ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증빙서류 1부

* 제출서류는 반드시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별지서식 제1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응시직급 (지원코드)	공업9급 (001)	성 명		생년월일	
응시자격요건	□ 산업기사 이상 □ 기능사 + 경력2년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 응시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시 부적격으로 처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구 분			제출여부 확인
1. 응시원서 1부 (정부수입인지 포함*) * 응시수수료 면제자의 경우 정부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필수	별지서식 제2호	□ 제출 □ 미제출
2. 이력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3호	□ 제출 □ 미제출
3. 자기소개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4호	□ 제출 □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5호	□ 제출 □ 미제출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6호	□ 제출 □ 미제출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7호	□ 제출 □ 미제출
7.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표기)	필수	-	□ 제출 □ 미제출
8.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필수	-	□ 제출 □ 미제출
9.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사본 1부	필수	-	□ 제출 □ 미제출
10.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	별지서식 제8호 (서식 외 제출 가능)	□ 제출 □ 미제출
11.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	□ 제출 □ 미제출
12. 우대요건 해당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	□ 제출 □ 미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귀하

본인은 2025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업9급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의 응시자격요건을 기재 (예시) 기능사+경력2년*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업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예) '공업9급(농업기계) / 001'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기입
(예) '기능사+경력2년'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응시 자격 요건	기능사+2년	성명	

2. 응시자격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필수경력 *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관련경력만 기재	16.1.1 ~ 17.12.5	주무관 (9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3. 우대요건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관련경력만 기재	18.1.1 ~ 20.12.5	주무관 (9급)	*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유형	점수
	장애인 등록증	'00.0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기입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ㅇㅇ분야 경력 요건 중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3년의 경력은 '2.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2년의 경력은 '3.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⑤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 등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별지서식 제4호> (예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서식) 글자크기: 13포인트, 글자모양: 휴먼명조, 분량: A4 2매 이내

(작성요령) 지원동기, 가치관, 특기사항 및 응시한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업무실적 및 성과)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최근의 실적부터 기술)

2025년　　월　　일　　작성자　　(인)

<별지서식 제5호> (예시)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서식) 글자크기: 13포인트, 글자모양: 휴먼명조, 분량: A4 3매 이내

(작성요령)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예)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2025년 월 일 작성자 (인)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 *※ 해당 기관 자체 서식으로 제출 가능. 단,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불이익(경력 불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타 서류 등으로 보완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관련 유의사항] 확인)*

경 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②	비고
경력 사항	부터	까지					
	(예시) '10.5.1	'15.5.31	㈜○○	사원		주30시간	

	포 상			징 계		
상벌 사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담당업무 미기재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② 근무형태 : 주00시간 근무 기재